

인천지방법원 2023. 4. 21 선고 2021가합5480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로월드

담당변호사 김진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창범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엘파트너스

담당변호사 이주하

변 론 종 결 2023. 3. 10.

판 결 선 고 2023. 4. 2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사업자등록 명의1)에 관하여 체결된 2019. 7. 8.자 사업자등록

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자신이 임차하고 있던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와 F호를 C에게 전대하던 중, C이 차임을 연체하자 C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와 함께 인도 시까지의 차임을 청구하는 소(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11357호)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9. 1. 29. ‘C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, 2017. 6. 30.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,500,000원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으로 원고 승소 판결(이하 ‘이 사건 판결’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9. 7. 11.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13725호로 C이 G 주식회사, H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I 소래포구점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압류추심명령(이하 ‘이 사건 압류추심명령’이라 한다)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19. 7. 23.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.

다. 한편, 2019. 7. 8. 위 I 소래포구점의 사업자등록(이하 ‘이 사건 사업자등록’이라 한다) 명의가 C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원인

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 있는데, C은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하였으므로, 위 사업자등록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를 C으로 변경할 것을 구한다.

3.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주장의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시점인 2019. 7. 11. 사해행위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,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. 3. 8.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'취소원인을 안 날'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,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,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(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26475 판결,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. 3. 8.을 기준으로 1년 전에 C이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것이 사해행위, 즉 C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하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4. 본안에 대한 판단

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사업자등록 명의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변경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나, 피고와 C 사이에 사업자등록명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[가사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의 변경으로서 명의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,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,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데(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다58963판결 참조),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으로써 채무자 C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,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가 거래의

대상이 된다거나 재산상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와 C 사이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을 재산상 처분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따라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]

5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동기, 판사 김현준, 판사 김혜림

별지

1) 별지 사업자등록 기재 ‘3. 성명: C’은 ‘3. 성명: B’을 착오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.